

서산군농업기계순회수리반설치 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

서산군농업기계순회수리반설치및운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 제1항중 “기타”를 “농업기계부품센터의 운영에 관한”으로 하고, 같은 조중 “제2항내지 제5항”을 삭제한다.

제3조의 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3조의 2(순회수리 및 부품공급) ① 순회수리

의 대상지역은 자연부락 단위로 순회하여 수리함을 원칙으로 하되, 교통이 불편한 산간 오지마을을 우선으로 한다.

② 농한기등 필요한 경우에는 수요농민의 내방수리도 할 수 있다.

③ 부품공급은 순회 수리시 또는 지도소 내방자가 요구할때에 공급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 대비표

현	행	개	정	안
제3조(기능) ① 순회수리반은 수리정비 부속품 대체 <u>기타</u> 업무를 담당 한다.	② <u>대상지역은 면, 리자연부락 단위 순회수리를 원칙으로 하되 교통 이 불편한 산간 오지마을을 우선 한다.</u>	③ <u>농한기등 필요한 경우에는 수요 농민의 내방수리도 실시한다.</u>	④ <u>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순회수리시 또는 지도소 내방자에게 부품을 공급한다.</u>	⑤ <u>기존농기계 부품센터는 순회수리 반에 흡수, 함께 운영 하므로서 농민에 대한 편익 도모에 기여 한다.</u>
		② (삭 제)	③ (삭 제)	④ (삭 제)
			⑤ (삭 제)	